외환 상담창구 운영

자세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상담은
Help Desk로 문의 바랍니다.

상담관: 전성배(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과장)

TEL. 02-510-1750

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
(논현2동 71)

www.customs.go.kr

중소 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

외환절차 및 위반사례

서울세관
Seoul Customs

서울세관
Seoul Customs

01 외국환거래 신고등 관련 기관

기획재정부(www.moef.go.kr)
외국환거래법규 제·개정 및 해석

한국은행(www.bok.or.kr)
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
(외국환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)

외국환은행: 국내 각 시중은행,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
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(한국은행 신고대상 거래 제외)

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
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

금융감독원(www.fss.or.kr)
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검사

관세청(www.customs.go.kr)
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

02 KOTRA 해외시장 뉴스(news.kotra.or.kr)

주요 제공 서비스
- 최신 해외 경제·통상·투자 뉴스
- 국가·지역별 유망 상품 산업 정보와 트렌드
- 해외 인증정보와 바이어 찾기 등 해외 비즈니스 정보
- 주요 현안 및 수출 동향 보고서 제공
- 해외직접투자 절차, 국가별 참고자료, 유망프로젝트, 진출 기업정보
-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무역자료실 운영

정보제공 유관기관
-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KOTRA,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24개의 해외진출 지원부처 및 기관

03 해외통관 및 투자 정보 얻을 수 있는 곳

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(www.customs.go.kr)
➡ **패밀리사이트**
해외통관지원센터국가별 통관정보, 민원상담센터 운영

해외건설협회(www.icak.or.kr)
➡ **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** ➡ **국가별 환경**
국가별 해외건설 관련 투자정보 제공

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(keri.koreaexim.go.kr)
➡ **국제지역**
정보국가별 동향, 신용도 및 투자환경 정보 제공

외국환거래법

주요 위반유형

사실과 다른 증빙자료를 이용한 지급 및 수령 01

[법 제15조, 시행령 29조, 규정 제4-2조*]

법 제15조 제1항: 일반적인 지급절차

법 제15조 제2항: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,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위한 지급시 (기재부장관의 허가 필요)

* 건당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

위반사례

- 1항 : 거주자 A는 허위 인보이스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가장하여 미국에 송금
- 2항 : 이란* 국민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기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음

* UN 제재대상국가

채권·채무 상계 02

[법 제16조 1호, 시행령 30조, 규정 제5-4조]

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한 5천 달러 초과 채권·채무 상계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상계처리 후 30일내 사후보고 또는 한국은행총재*에게 신고

*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, 다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

위반사례

-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A사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처분하면서 해당 주식을 비거주자인 채권자 37개사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나,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

기간을 초과하는 지급·수령 03

[법 제16조 2호, 시행령 30조, 규정 제5-8조]

아래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

1. 수출(계약건당 5만 달러 초과 수령)

① 본지사간 거래로 D/A 결제기간 3년 초과

② 본지사간 거래로 물품선적 전 선수금 수령

③ 본지사간 아닌 거래로 물품선적 전 수출대금을 1년 이전 수령. 다만, 선박, 철도차량, 항공기, 「대외무역법」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

2. 수입

① 건당 5만 달러 초과 재수출목적의 금 수입대금을 물품수령 후 30일 초과하여 지급

② 건당 2만 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수령 전 1년 이전 지급. 다만, 선박, 철도차량, 항공기,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 달러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

※ 상기의 1-③, 2-②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

위반사례

- 국내 A사는 홍콩 현지법인에 10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적 전 100만 달러를 수령하고, 6개월 후 수출 이행
-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와 원자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B사로부터 1년이 넘도록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함

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04

[법 제16조 3호, 시행령 30조, 규정 제5-10조]

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한 5천 달러를 초과하고 1만 달러이내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, 그 외 사항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

위반사례

- 미국의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
- A사는 이탈리아 B사와 소가죽 원피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의 75%는 B사에 직접 지급하고 25%는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한 C사에 지급함

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05

[법 제16조 4호, 시행령 30조, 규정 제5-11조]

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등을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

위반사례

- 대만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수입하면서 수입대금 일부는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, 일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 입국한 대만수출자의 대표에게 직접 지급

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화폐, 수표, 증권, 어음 등을 반출입하는 행위 06

[법 제17조, 시행령 31조, 규정 제6-2조]

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및 국민인 거주자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

위반사례

- 이란에 기어박스 등을 수출하면서 이란의 중개상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6만 유로를 휴대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미신고
- 미국 영주권자 A는 2만 달러의 '외화수표'를 반입하면서 국내 입국 시 세관장에게 미신고

거주자의 해외예금 미신고 07

[법 제18조, 시행령 32조, 규정 제7-11조]

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*에게 신고하여야 함

* 거주자(기관투자가,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자, 해외건설업자 등 제외)가 건당(동일자, 동일인 기준)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

위반사례

-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국내 A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도피·은닉하기 위하여,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없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래
-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매각자금 중 일부 금액을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하였으나,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

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 08

[법 제18조, 시행령 32조, 규정 제7-46조]

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, 상속 등에 따른 채권발생거래 시 외국환은행장* 또는 한국은행총재**에게 신고

* 건당 3천만 달러 이하 물품임대차 계약 체결시(부동산 제외), 국내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의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 체결시(소유권 이전 제외)

**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임대차계약(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)·담보·보증 등 이와 유사한 계약 및 상속·유증·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시

위반사례

-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임차 수입하여 운항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
- 의류제조업체 A사는 베트남 소재 B사로부터 재봉틀 기계를 30만 달러에 구입한 후 외국환은행장에게 '신고없이' 현지 거래업체 C사에게 재봉틀 기계를 임대

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직접투자 09

[법 제18조, 시행령 32조, 규정 제9-5조]

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(증액투자를 포함)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*에게 신고하고 신고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신고기관장에게 보고

* 다만,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할 수 있으며,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가능

위반사례

- A사는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 없이 일본소재 현지법인의 지분 10%를 인수
- B사는 일본 소재 현지법인에 미화 20만 달러를 '14.3월~'16.3월(2년) 기간 중 대부투자 한다고 신고하였으나,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없이 대부 투자금액 중 10만 달러를 회수함

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투자 10

[법 제18조, 시행령 32조, 규정 제9-39조]

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·변경시 외국환은행장*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후 수리

* 투자목적,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의 체재목적, 임대보증금 1만 달러 초과 외국부동산 임차시

위반사례

- 거주자 A는 투자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